

의안번호	2205231
의 퇴 인	한민수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0.
추 계 번호	24B4835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현행법 제2조제14호 나목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경우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4억 1,000만원(연평균 2억 8,2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(안 제22조)	271	276	282	288	293	1,410	282

주: 1.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 중인 웹하드 등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실태점검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현장 점검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) 제4항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,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.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2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) 제4항 신설	○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¹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 등의 준수 여부 실태 점검(안 제22조제4항 신설)
 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의 등록 요건²⁾ 준수 여부 및 등록 시 붙인 조건³⁾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4. 10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(단위: %)

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으로, 정기 점검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의 등록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22조의3⁴⁾에 따라 제2조제14호가목⁵⁾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웹하드 등 34개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, 2023년 기준 소요비용은 8,156만원

임

[표 2]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실태점검 현황

구분	내용
점검대상	○ 34개 사업자 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4호가목(웹하드 등)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
점검방법	○ 소관 업무별 관계기관 합동(현장)점검 실시
소요비용	○ 총 8천156만원 - 국내여비: 156만원 / 정보보호지침 준수여부 점검: 8천만원
비고	※ 소요비용 산출내역 ○ 국내여비(156만원) - 근무지내(124만원=2만원×2인×31회) + 근무지외(32만원=4만원×2인×4회)

- 2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(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) 하여야 한다.
 1. 제22조의3제1항 및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(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)
 - 1의2.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(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)
 2.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
 3. 재무건전성
 4.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3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4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3(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)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(이하 "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"라 한다)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,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
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,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.
- 5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4. "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 - 가.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
 - 나.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

구분	내용
	○ 정보보호지침 준수여부 점검 - 예산과목 : 133-2300-2332* *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→ (3) 사이버공격 예방체계 운영 → (3-2) 기업 보호체계 운영 → ② 웹하드업체 보안점검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 중인 웹하드 등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실태점검 예산을 참고하면, 개정안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현행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4억 1,000만원(연평균 2억 8,2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
 - 정보보호 점검 단가 및 여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물가상승률 반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내역

구분	제출자료
국내여비	- 근무지내(1,488만원=2만원×2인×3팀×124일) + 근무지외(2,130만원=5만원×2인×3팀×71일) + 예비비(181만원) = 3,799만원 * 1일 2개 업체 점검 및 3개 점검팀(2인) 기준 * (근무지내/외 사업자수) 742개사 / 422개사 ('24.10월 말 기준) * (예비비) 사업자폐문, 자료미비 등 중복점검 소요예산(본여비 5% 상당)
정보보호 점검	- 정보보호 점검 : 1,164개사×20만원×1회 = 2억 3,280만원 * 「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관리업무 가이드」 상 정보보호 점검 시 외부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단가 기준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[표 4]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관련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현장점검	271	276	282	288	293	1,410	282

주: 1.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 중인 웹하드 등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실태점검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현장 점검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 중인 웹하드 등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실태점검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현장 점검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